

#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광성 의원)

의안 번호	26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년 5월 13일

발 의 자: 김광성 의원

찬 성 자: 김성기, 이은미, 박춘희의원

## 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람과 가축·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축산농가의 책무(안 제4조)

다. 지원(안 제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축산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 첨부)

다. 입법예고: 2024. 4. 11. ~ 2024. 5. 1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4. 3. 28. ~ 2024. 4. 5.(9일간), 아래표 참조.



## 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축산업”이란 「축산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.
2. “축산농가”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축사”란 법 제8호의2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·돈사·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축산환경”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.
5. “축산환경 개선”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·구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.

**제3조(군수의 책무)** 평창군수는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축산농가의 책무)**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군수가 시행하는 축산환경 개선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)**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가축분뇨 퇴비,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
3.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
4.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관계법령】

### 축산법

[시행 2023. 1. 1.]

**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**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 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·이용촉진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2. 2. 22., 2013. 3. 23., 2018. 12. 31.>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#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4. 4. 1.]

**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비용추계서 (제3조제1항 관련)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관련조문 : 조례안 제5조(지원)

나. 비용발생 요인 : 축산농가 대상으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축산농가 328개소(2024. 4월 기준) 대상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
  - 축사 악취저감제, 톱밥, 가축분뇨 처리장비, 퇴비사, 액비생산시설, 액비순환시스템, 악취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·장비 등 지원

나. 추계 결과

구 분	산출기초(2024년)	예산액	비 고
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	33천원×3,030포	100,000천원	자체사업
환경축산기반용 톱밥공급	300원/kg×2,334톤×50%	350,000천원	자체사업
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	40,000천원×4개소×50%	80,000천원	도비+자체
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지원	50,000천원×3개소×50%	75,000천원	도비+자체
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	50,000천원×1개소×50%	50,000천원	도비사업
액비순환시스템 지원	150,000천원×1개소×50%	75,000천원	도비사업
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	50,000천원×2개소×50%	50,000천원	도비사업
부숙축진 악취저감제 지원	5,000천원/톤×10톤×50%	25,000천원	도비사업

다. 재원조달 방안 : 국비 보조 및 자체 재원(2024년 당초예산 편성)

#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
연락처	(033) 330 - 1306

**< 연도별 비용추계표 >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<b>세 입</b>		0	0	0	0	0	0
<b>세 출</b>	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3,900,000
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	입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환경축산기반용 톱밥 공	급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350,000	1,750,000
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 비	지 원	80,000	80,000	80,000	80,000	80,000	400,000
친환경축산 퇴비자원 화 시 설	지 원	75,000	75,000	75,000	75,000	75,000	375,000
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	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액비순환시스템	지 원	75,000	75,000	75,000	75,000	75,000	375,000
가축분뇨 배출시설 악 취 저 감	지 원	50,000	50,000	50,000	50,000	50,000	250,000
부속축진 악취저감제 지	원	25,000	25,000	25,000	25,000	25,000	125,000
<b>재원 조달</b>	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780,000	3,900,000
의존 재원	소 계	72,000	72,000	72,000	72,000	72,000	360,000
	보조금	72,000	72,000	72,000	72,000	72,000	360,000
	지방교부세						0
자체 수입	소 계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3,540,000
	지방세						0
	세외수입						0
	군비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708,000	3,540,000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